

[서식 예] 인신매매죄

고 소 장

고 소 인 누엔** (영문명 *******, 국적 필리핀인) ○○시 ○구 ○○로 OO

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8조 제2항 인신매매죄로 형사 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 소 원 인

- 1. 고소인은 필리핀 국적의 23세 여성입니다.
- 2. 고소인은 평소 노래 부르는 것에 재능이 있어 필리핀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다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, 가수가 되기 위한 여건이 쉽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
- 3. 그러던 중 고소인은 한국에서 가수를 시켜주겠다는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, 피고소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예술흥행비자(E-6)를 받아 2000. 00. 00.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.
- 4.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고소인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잠시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빼앗아버리고, 고소인을 가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두천에 있는 한 OO유흥주점에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.



- 5. 다행히 고소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몰래 유흥주점을 빠져나오긴 했지만, 피고 소인으로 인해 정신적, 육체적,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다.
- 6.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9조가 정한 인신매매죄로 고소하오니 피고 소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고소인 누엔**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기 이 이 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
	도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
	(※ 아래(1)참조) 소추요건
제출부수	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89조
범죄성립 요 건	·사람을 매매한 경우(형법 289조 1항)
	· 추행,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경우(형법 289조 2항)
	·노동력 착취, 성매매와 성적 착취,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
	매매한 경우 및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
	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(형법 289조 3항, 4항)
형 량	· 7년 이하의 유기징역(형법 289조 1항)
	·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(형법 289조 2항)
	·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(형법 289조 3항, 4항)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 복 절 차 및 기 간	(항고)
	·근거 : 검찰청법 10조
	・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
	(재정신청)
	・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
	・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
	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
	(헌법소원)
	·근거 : 헌법재판소법 68조
	・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
	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
	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
	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